

「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」 확정

- “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” 달성을 위한
5년 간의 외국인정책 설계도 마련 -

- 법무부는 12월 27일(수) 외국인정책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 심의를 거쳐 「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」(‘23~‘27년)을 확정하였습니다.

< 제27회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 >

- 기간/방식 : ‘23.12.22.(금) ~ 27.(수), 서면회의
- 위원 구성 : 위원장(국무총리), 정부위원(19명), 민간위원(9명) 등 총 29인
- 회의 안건 :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‘23~‘27년) 등 3건*

* ‘21년, ‘22년 외국인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도 함께 심의·확정

- 제4차 기본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(‘18~‘22년)이 마무리됨에 따라, 향후 5년간(‘23~‘27년) 이민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입니다.
- 법무부는 제4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최초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여 온·오프라인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, 이민정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논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.
- 제1~3차 기본계획을 통해 질서 있는 개방, 이민자 적응·통합 지원, 인권·다양성을 증진하는 과제를 추진하였으나, 외국인 유입과 통합의 연계 미흡, 부처(분야)별 분절적인 정책 추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.
-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수요를 반영한 이민정책, 사회통합 지표를 통한 평가·환류 시스템 도입으로 이민자 유입·통합 정책을 체계화하고, 다부처 협력을 통한 체류질서 확립, ‘출입국·이민관리청’ 신설 등 범정부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강조 하였습니다.

- 이번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23~'27년)은 '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'를 비전으로 하여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뒷받침하고, 비전의 체계적 달성을 위해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.
- 이번 기본계획의 5대 정책 목표는 ①^(경제)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, ②^(안전)안전하고 질서있는 사회 구현, ③^(통합)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, ④^(인권)이민자의 인권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⑤^(협력/인프라)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입니다.
- 이번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. 특히, 모든 정책영역(경제, 안전, 통합, 인권, 협력·인프라)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, 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와 숙련인력, 농어업 분야 등 인력공급, 불법체류 대응, 국경관리를 위한 협업 등의 다양한 부처 협력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.
- 법무부는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, 성과 관리 및 평가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.

[참고]

1. 외국인정책위원회 개요
2.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23~'27년) 비전 및 정책목표
3.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'23~'27년) 주요 추진 과제

담당 부서	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 외국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	하용국	(02-2110-4105)
		담당자	사무관	김경수	(02-2110-4112)



□ 큰 거

- 「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」 제8조 (동법 시행령 제7조~제11조)

제8조(외국인정책위원회) ①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둔다

□ 위원회 구성 (위원장 포함 30인 이내, 법 제8조제3항)

- (위원장) 국무총리
- (당연직) 정부위원 19명 (기재부·법무부 등 19개 부처 장관, 위원장, 청장)
- (위촉직) 민간위원 9명 (임기 3년*, 국무총리 위촉)

* 제6기 '23.6.1.~'26.5.31.

- (간 사) 법무부 출입국·외국인정책본부장

※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, 실무분과위원회 설치·운영

□ 주요 기능 (외국인정책 주요 사항 심의·조정)

- 외국인정책 기본계획(5년 단위)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연도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수립,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
- 국적취득 후 사회적응에 관한 주요 사항
- 그 밖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

비전

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

정
책
목
표

【경제】

이민을 활용한
경제와 지역발전 촉진

【안전】

안전하고 질서있는
이민사회 구현

【통합】

국민과 이민자가
함께하는 사회통합

【인권】

이민자의 인권 가치를
존중하는 사회 실현

【협력/인프라】

글로벌 스탠더드에
부합하는 이민행정
기반 구축

중
점
과
제

-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
-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
- 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
-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

-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
-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
-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

- ①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
-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·소통 증진
-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
-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

- ①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
- ② 여성·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
-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

-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
-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
-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
- 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

① 【경제】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

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를 위해

- △ 주요 취업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도입
- △ 외국인행정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부부처 간 송·수신할 수 있는 외국인 행정정보 종합플랫폼 구축
- △ 부처 간 상이한 기본 인적정보 표기 방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하는 범정부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표준화 추진
- △ 유학생이 졸업 후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취업·정주할 수 있도록 국내유학인재 비자 연계 트랙(유학→구직→취업→거주) 구축

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을 위해

- △ 이공계 특성화 기관 석·박사 학위 취득자가 영주자격과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영주·귀화 패스트트랙 활성화
- △ 국가 연구경쟁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우수 해외 외국인 연구자 유치
- △ 단기 순환에 따른 산업계 숙련근로자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을 혁신적으로 확대* 및 개선
- * 연간도입 규모 : ('18) 600명 → ('20) 1,000명 → ('22) 2,000명 → ('23) 35,000명
- △ 외국인력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사·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 외국인력 도입 추진
- △ 음식점(주방보조원), 임업·광업 등 인력난 심화 업종에 비전문취업 외국인 고용 허용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 허용 분야 확대
- △ '창업이민종합지원프로그램(OASIS*)'을 통해 해외 스타트업 개발 인재 육성 등 인바운드 창업·취업 지원

* OASIS(Overall Assistance for Startup Immigration System) : 중기부·법무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운영하는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지원프로그램

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을 위해

- △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한 지역특화비자 정규사업화
- △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
- △ 지역별 인구, 외국인 분포, 외국인 유학생 학교·전공 분포, 산업별 외국인 고용, 지역 간 이동 등 지자체 맞춤형 외국인 행정데이터 분석 및 제공

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을 위해

- △ 다국어 지원, 유효기간 확대, 청소년 및 고령자 적용 제외 등 이용자 편의성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(K-ETA) 개선
- △ 동남아 일부 국가의 인센티브·수학여행단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단체전자비자를 일반관광객까지 확대
- △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워케이션*(Workation) 비자 신설

*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

② [안전]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

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

- △ 범정부적 협력을 통한 불법체류 반감 5개년 계획을 추진
 - ※ 현재 42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20만 명대 수준으로 감소
- △ 국가별 불법체류율 등 이민질서 위반 현황에 따라 4단계 대응방안에 의한 단계별 불법체류 대응체계 구축
- △ 유흥·마사지 업소 등 민생침해 분야 및 대포차 운행,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체류외국인 범죄 등에 대한 합동단속 강화
- △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출입 및 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

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

- △ 외국인인의 출국으로 인한 세금 체납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청·법무부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외국인 세금체납 방지시스템 마련
- △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개선 등을 위한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
- △ 외국인인의 주택 투기에 대한 상시 단속 및 추가 기획조사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 조사

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

- △ 입국자 정보분석 강화와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전자 입국 신고서 도입
- △ 마약·성폭력 등 사회적 파장이 크고, 재범률이 높은 특정 범죄에 대해 입국금지기간 상향 등 안전 위해(危害)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
- △ 항만을 통한 밀입국 등 범죄단속 및 첩보수집 강화를 위한 수사전담반 운영 등 항만국경 관리 선진화

③ [통합]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

①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를 위해

- △ 계량적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통합정책의 중장기적 효과성 측정
- △ 이민자 사회통합지수*를 활용한 지자체 정책컨설팅
 - * 체류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
- △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체류 유형별, 교육 단계별로 점진적 유료화
- △ 계절근로자, 재정착난민 등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 대상 확대

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·소통 증진을 위해

- △ 공무원의 이민정책 역량 강화 및 고용주, 유관기관 관련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 상호문화 이해 교육 강화
- △ 국민과 이민자의 친밀감 형성과 긍정적 경험 공유를 위해 이민자의 자원봉사활동과 재능기부 등 이민자 사회참여 활성화
- △ 대국민 특별강연, 문화다양성 콘텐츠 추천 전시 등 문화 포용성 제고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

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을 위해

- △ 취·창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 대상 '국민내일 배움카드' 발급, 훈련비 지원 등 이민자 직업훈련 강화
- △ 전국 가족센터 등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초기 적응과 안정적 가족생활, 자립 지원 등 정착주기별 맞춤형 정착지원 강화
- △ 외국인근로자(E-9)의 도입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력상담센터를 통한 상담 서비스 제공 강화
- △ 이주배경 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언어·기초학습 지원 등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
- △ 중도입국·외국인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·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제공하여 공교육 진입 및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

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을 위해

- △ 동포 간 차별 해소를 위해 동포의 체류자격 단계적 통합 추진
- △ 인구감소에 따른 구인난 해소를 위해 방문취업(H-2) 및 재외동포(F-4) 취업활동 범위의 합리적 확대
- △ 동포의 사회적응 및 국민의 유대감 증진을 위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
- △ 통합형 출입국행정서비스 안내서 제작 등 재외동포 대상 통합형 국내체류 안내 강화
- △ 동포로서의 기본소양을 체류자격 부여·변경·연장 등과 연계하여 4세대 동포의 한국어 학습 유도

④ **【인권】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**

①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

- △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에 대한 숙소 실태 및 최저임금,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지도·점검 강화 등 이민자 근로조건 점검
- △ 소송제기 등으로 공항 내 장기 대기하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해 출입국항 밖의 출국대기소 신설 추진
- △ 인권친화적 보호를 위한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
- △ 보호기간의 상한을 설정하고 이의신청, 보호기간 연장 심사를 위한 합리적인 심사 방안 마련 등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법령 정비

② 여성·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를 위해

- △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
- △ 다누리콜센터를 통한 긴급 상담 및 쉼터 연계, 이주여성·자녀를 위한 의료, 법률, 주거, 직업훈련 제공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지원
- △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강화

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을 위해

- △ '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' 시행, 난민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난민인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
- △ 이의신청 진행경과 조회·알림 시스템, 의견청취 확대, 유엔난민기구 (UNHCR)와의 공동 교육 등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
- △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국가정황정보를 신속하게 수집·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
- △ 인도적체류자의 체류자격 개편, 멘토링 프로그램, 심리치료 등 난민의 처우개선
- △ 재정착난민 수용사업의 정규화, 수용 규모, 대상 등 난민 보호 방식의 다변화
- △ 유엔난민기구(UNHCR) 집행이사회, 글로벌난민포럼(GRF), 재정착난민에 관한 3자간 연례회의(ATCR) 등 난민 관련 국제협력 체계 참여

5 **【협력/인프라】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**

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

- △ 국익의 관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'(가칭)출입국·이민관리청' 신설
- △ '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'을 '(가칭)이민정책 기본법'으로 전면 개정 등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법제 등 정비

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을 위해

△ 사회통합 전문인력별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등 **사회통합 전문인력***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

*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,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, 구술시험관, 통합시민교육 강사, 다문화사회 전문가, 이민자 멘토단 등

△ 지역 특성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해 중앙-지방-학계-연구계 협력 플랫폼인 '**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**' 구축

△ 내·외국인 대상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 교육센터와 증거기반 이민정책 연구 지원을 위한 통계·데이터 분석센터 신설 등 **이민정책연구원 기능 강화**

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를 위해

△ 현행 방문중심 민원시스템을 온라인 기반으로 통합하는 **이민행정 온라인 민원 시스템 구축**

△ 외국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**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**

△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이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**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**

△ 시의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한 내·외국인 인구추계주기 단축, 이민자 체류실태및고용조사 개선 등 **이민정책 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도 제고**

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를 위해

△ GCM 국가이행보고서 작성 및 이행점검 회의 참석 등 **GCM 자발적 이행 점진 강화**

△ 국제이주 관련 연구 및 각 국의 국제이주정책에 대한 자료 공유 및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**OECD 이주작업반 참여 확대**

△ 이민정책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(ODA) 사업 추진을 위한 **이민과 개발 (Migration&Development)의 정책화 추진**